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통합본



가이드라인 활용 안내사항

- 본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로부터 스포츠인을 보호하고 스포츠계의 전반적인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제작·배포되었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에 사용된 정의와 예시, 각각의 사례와 관련 법률은 대략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용자 및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학부모/협회 관계자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학부모/협회 관계자용 가이드라인은 선수 혹은 자녀의 인권이 잘 지켜지고, 보호되고, 존중 받고 있는지를 참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요소들에 대해 숙지하시고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올바른 대처방법과 사건 발생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참고하시어 건전한 스포츠 인권 문화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PART 1

스포츠인권의 이해 | 9

1. 인권의 정의 | 9
2. 스포츠현장에서의 인권 | 9
3. 스포츠인권 현장 요약 | 9
4.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인권 강조 | 10

PART 2

인권침해 유형 | 11

1. 폭력 | 13
 - 1) 폭력의 정의
 - 2) 폭력의 유형
 - 3) 폭력의 사례
 2. 성폭력 | 16
 - 1) 성폭력의 정의
 - 2) 성폭력의 유형
 - 3) 성폭력의 사례
 3. 학습권 침해 | 19
 - 1) 학습권 침해의 정의
 - 2) 학습권 침해의 유형
 - 3) 학습권 침해의 사례
 4. 사생활 침해 | 21
 - 1) 생활 침해의 정의
 - 2) 사생활 침해의 유형
 - 3) 사생활 침해의 사례
-

CONTENTS

PART 2

5.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 | 23

- 1)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 정의
- 2)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
- 3)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PART 3

예방 및 대응가이드 | 25

1. 폭력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27
2. 성폭력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28
3. 학습권 침해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28
4. 사생활 침해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29
5.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29
6.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등) 발생시 대응가이드 | 30

PART 4

부록 | 41

1. 관련법률 | 43
 - 1) 스포츠 폭력 관련 법률
 - 2) 성폭력 관련 법률
 - 3) 디지털 성착취 법률
 - 4) 학교폭력예방법
 - 5) 국민체육진흥법
2.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중요사항 발췌) | 51
3. 체크리스트 | 52



참고문헌 | 53





Part 1

스포츠 인권의 이해

1. 인권의 정의
2. 스포츠현장에서의 인권
3. 스포츠인권 헌장 요약
4.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인권 강조



1. 인권의 정의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2.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

스포츠는 신체를 이용해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인권이다.
그러므로,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

3. 스포츠인권 현장 요약

제1장 스포츠는 인권이다.

제1조 자유로운 신체활동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스포츠는 인권이다.

제2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성별, 성적(性的) 지향,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운동능력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함)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체육단체 등 체육 관련 기관과 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함)는 이 권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완전한 형태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누구나 원하는 신체활동을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다양한 신체활동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그 자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

제2장 스포츠는 자기표현의 도구이다.

제3장 누구나 스포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4장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탁월한 목표 달성에 도전할 권리가 있다.

제5장 누구나 스포츠를 직업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6장 스포츠는 안전한 활동이어야 한다.

제7장 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이다.

제8장 스포츠는 인권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차별 또는 인권침해를 신고하거나 문제 제기로 인해 어떠한 종류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 국가 등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장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4.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의 인권 강조



올림픽헌장 내 올림픽 이념의 기본원칙 중

2. 올림픽이념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보존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를 통해 조화로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6.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권리 및 자유는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IOC는 스포츠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레저활동을 즐길 권리, 비차별, 안전, 기본욕구에 대한 존중 및 건강한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인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올림픽 아젠다 2020+5 권고사항 13번을 통한 인권 강조

- 인권관련 전략적 틀 도입 승인(2022년 9월)
- 5개 핵심 집중 영역
 - 1) 평등과 비차별
 - 2) 안전과 복지
 - 3) 생계 및 양질의 일자리
 - 4) 발언의 자유
 - 5) 사생활 보호

올림픽 아젠다 2020+5는?

IOC 집행위원회가 2021년 3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로운 올림픽 개혁안으로 총 15개의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13번 권고안에는 한 조직으로서의 IOC, 올림픽대회의 주인으로서의 IOC, 올림픽무브먼트의 리더로서의 IOC가 인권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Part 2

인권침해 유형

1. 폭력

- 1) 폭력의 정의
- 2) 폭력의 유형
- 3) 폭력의 사례

2. 성폭력

- 1) 성폭력의 정의
- 2) 성폭력의 유형
- 3) 성폭력의 사례

3. 학습권 침해

- 1) 학습권 침해 정의
- 2) 학습권 침해의 유형
- 3) 학습권 침해의 사례

4. 사생활 침해

- 1) 사생활 침해의 정의
- 2) 사생활 침해의 유형
- 3) 사생활 침해의 사례

5. 지도자에 대한 인권 침해

- 1)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정의
- 2)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유형
- 3)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사례



1. 폭력

1) 폭력의 정의

· 폭력이란?

권력(힘)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약한 사람에게,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폭력의 종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등에 의한 신체, 정신(정서), 심리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

스포츠폭력이란?

스포츠 영역에서 스포츠참여자 및 관계자(선수, 지도자, 심판 등)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구타하거나 상처가 나게 하는 것, 특정 어느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 겁을 먹게 하는 것, 강요하는 것,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것, 인격이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남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 반복하여 따돌리는 것 등)



여기서 잠깐! 폭력의 특성은?

(1) 힘의 불균형

관계 내 권력 구조가 존재하며, 주로 강자가 약자를 향해 폭력을 행사

(2) 반복성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반복적으로 발생

(3) 행위성

의도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성을 띠다면 폭력에 해당

장난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마친 A선수는 운동부 복도에서 한 학년 선배인 B선수를 마주쳤다. 오늘도 B선수는 A선수의 어깨를 일부러 세게 부딪히며 밀어붙이듯 지나친다. A선수가 아파하며 불편해하자 B선수는 “아, 장난이야 장난~!” 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 버린다. A선수는 한 두 번도 아니고, 마주칠 때 마다 일부러 어깨를 부딪혀오는 B선수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지만, 선배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참고 넘어가고 있다.

2) 폭력의 유형

(1) 신체적 폭력

신체적 트라우마 또는 부상을 야기 시키거나 선수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 행위 (밀치기, 발로차기, 때리기, 물건 던지기, 기합, 열차려 등)

(2) 방관적 입장의 폭력

집단 구성원들이 폭력 행동을 무시하거나 모른 체 하는 것 혹은 폭력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지지하는 행위

(3) 정신적 폭력

몸에 상처가 나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은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감정적 학대 행위

- ① 언어적 행위: 말이나 욕설 등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 (고함 and 욕설, 외모 비하, 협박 등)
- ② 관계적 행위: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이나 겁을 주거나 따돌리는 것 (무시하기, 따돌리기, 비웃기 등)
- ③ 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행위: 개인의 할 일이나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것 (심부름 시키기, 음주 혹은 흡연 강요하기, 자유 시간 통제하기, 가스라이팅 등)

(4) 경제적 폭력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① 선수 개인 소지품과 개인 훈련 장비를 서로 간에 돌려주지 않거나 장기간 빌리는 행위 (스마트폰, 고가의 이어폰 등 IT기기, 브랜드 옷과 신발 등)
- ② 상급이나 부상의 상납 또는 갈취, 선물 등을 강요하는 행위 (생일, 명절, 회식 등 특정한 날에 부당한 선물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것)

4) 스포츠폭력의 사례

·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관습

운동부의 체육관은 여러 학년이 함께 사용하지만, A운동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으로 신입 부원들이 모든 체육관의 청소와 운동 장비 정리를 도맡아서 하고 있다. 신입 부원들은 함께 사용하는 체육관을 신입들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재학생 선수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해 오던 것이라는 이유로 신입부원들에게 청소를 강요하고, 신입 부원 길들이기라는 명분 하에 의도적으로 체육관을 더럽히기도 한다. 게다가 불공정함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는 신입부원은 '너는 우리 운동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시하거나 괴롭히기 때문에 신입부원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 재학생들은 억울하면 1년만 참으라며 기존 관행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 폭력의 방조 또는 방관

이번 대회에서 부진한 실적을 낸 A선수와 동기인 B선수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어 선배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채팅방에는 연대 책임이라는 이유로 A, B선수와 같은 기수의 선수들이 모두 초대되어 비난을 받고 있다. 선배들의 거친 욕설과 협박이 마구잡이로 올라오자, B선수는 감당하기 힘들어 채팅방을 나가보지만 계속해서 다시 채팅방에 초대되었다. 결국, 고참 선배 한 명이 말로는 안되겠다며 다른 선배들을 시켜 A, B선수와 동기들을 운동부실로 집합시켰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A선수는 감독님께 말씀을 드릴까 잠시 고민하였으나, 동기들이 모두 같은 상황인데 나 혼자 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마음을 접었다.



폭력 행위를 지켜보고 방관한 학생도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조치도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학교폭력 신고의무))



폭행 당시 옆에서 피해 학생을 지켜보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 현장에서 위압감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 것에 해당하며,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현장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위 사례와 같이 가해 학생의 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특수 폭행죄가 성립하여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모든 가해행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

스포츠 성폭력이란?

스포츠에 참가하는 스포츠참가자 및 관계자(선수, 지도자, 심판 등)이 자신의 힘과 권력,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접촉, 언어적 성희롱, 강제추행, 음란성 메시지, 성적 행위 강요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 개인이 사회적 분위기나 타인에 의해 강요 받거나 지배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
- 스포츠에서의 '관습적인 성차별적 문화'로 침해 받는, 운동선수의 성적 자기결정권



2) 성폭력의 유형

(1) 신체적 성폭력

폭행이나 협박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든 신체적 가해 행위

(2) 정신적 성폭력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적절한 말과 행동 혹은 상대에 대한 통제능력 행사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 불쾌감을 주는 행위(성적 비유, 외모평가, 공개장소에서의 음란물 시청 등)

(3)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협박, 전시, 판매하는 등의 행위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4) 스토킹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3) 성폭력의 사례

① 사진 도용 후 무단 유포

지역 친선대회 후 주요 경기 장면과 동영상, 단체 사진을 포함하여 선수들끼리 찍은 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 그런데 선수 중 한 명이 다른 선수들의 동의 없이 A 선수의 사진과 영상을 모호하게 편집하여 “반도의 hot한 운동선수 몸매”라는 제목의 이미지를 만들어 본인 SNS 계정에 올린 것이 알려졌다. 해당 SNS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몇 승인된 사람들이 이미지를 캡처하여 자신의 다른 채팅방이나 SNS에 공유하면서 순식간에 A 선수의 사진은 노골적인 성희롱과 악플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A 선수의 항의와 신고로 원본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퍼져버린 사진으로 A 선수는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 3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같은 지역, 같은 종목 출신 운동부의 남자 선후배가 모인 단체 대화방은 합숙훈련 시즌이 끝나면 소속 여자 운동부원들의 사진이 경쟁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외모에 대해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데, 그 중에는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 촬영하거나 락커룸에서 탈의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도 있다. 단체 대화방 멤버 중에는 본인의 개인 SNS나 오픈 채팅방에 사진들을 모아서 “#국대급_외모 #종목별_얼짱스타” 등의 해시태그(#)를 붙여서 온라인 투표를 하기도 한다. 본인의 사진이 이런 단체 대화방에 올라가 온갖 성희롱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선수도 있지만 단체 대화방은 없애버리면 그만이라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 포기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학습권 침해

1) 학습권 침해의 정의

(1) 학습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인간적으로 성장·발달해 나갈 권리

(2) 학습권 침해란?

교육을 통해 인격적, 지적, 기능적 향상을 누릴 권리와 충분한 휴식 및 여가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

2) 학습권 침해의 유형

(1) 수업결손

경기력 향상을 위해 과도한 경쟁 및 훈련으로 인하여 일일 훈련횟수 증가, 주당 훈련 일수 과다로 정규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

(2) 훈련 피로도로 인한 학업 소홀

선수 개인 신체 능력 및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훈련으로 인해 학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

(3) 학교 행사 불참

선수의 동의 없이 학교에서 안내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훈련일정을 계획하여 선수가 공식적인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

(4) 형식적인 보충수업

보충수업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활용하고 보충학습을 선수가 알아서 하도록 방임하는 것



3) 학습권 침해 사례

- 운동과 학업 병행에 대한 선수 의견 무시

고등학생 A 선수는 부상이나 집안 사정 등의 이유로 생각보다 빠르게 선수생활을 종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은퇴 이후 지도자가 아닌 다른 길도 생각해보고 싶어서 학교 수업을 통해 기본 교양과 지식을 학습하고 대학진학을 위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러나 지도자와 부모님은 운동해서 대학을 가면 된다며 훈련에 더 집중할 것을 요구했고 같은 팀에서 예외를 들 수 없다며 선수A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 수업 불참을 공문 처리 했다.

- 학습 결손

대회 준비를 하는 선수A는 새벽, 오전, 오후, 야간 하루에 네 번 연습에 참여한다.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팀에 피해가 갈까?'하는 마음에 연습에 빠질 수도 없다. 온종일 연습하는 시간 외에 수업을 들어가고자 해도 너무 피곤해서 집중이 되지 않고 잠만 자게 된다. 수업에 들어가는 것 또한 선수A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도자가 학교와 상의해서 수업일수를 정한다. 과도한 훈련으로 지친 선수A는 수업에 들어갈 수 있는 날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학교 수업에 참여하기 보다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집이나 휴게실로 발길을 돌린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에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관계자와 함께 선수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사생활 침해

1) 사생활 침해의 정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타인 또는 조직에 의해 침해 받는 행위

스포츠계 사생활 침해 사례

특별한 사유 없는 외출/외박/휴대전화 제한, 두발/염색 제한, 빨래/청소/심부름 강요, 스토킹, 휴대전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설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2) 사생활 침해의 유형

(1) 심부름 강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심부름, 운전, 빨래, 청소 등을 대신 시켜 사적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

(2) 사적시간 침해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외박의 불허, 운동 이후 자유시간 및 사적 공간과 시간 침해 등의 생활 통제를 하는 것

(3) 외모/복장 통제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 착용, 복장 등 운동과 무관한 외모 관리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하는 것

(4) 과도한 훈련일정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전에 공지된 일정을 초과한 과도한 훈련으로 인해 개인 시간이 침해되는 것



3) 사생활 침해의 사례

① 운동과 무관한 외모 간섭

“제 나이가 스무 살인데도 염색, 외모 같은 것.. 지켜야 하는 규제가 한도 끝도 없이 많고.. 선배들이 기강을 잡는다고 후배들에게 매일 험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말로 계속 주의를 주고... 제 자유란 절대 없어요.. 큰 폭력은 없지만 운동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터치를 하면서 힘들게 합니다.”

② 선후배간 사생활 간섭

선배들이랑 쓰는 게 진짜 불편했죠. TV도 못 봤어요. 문도 조용히 열고 나가야 했고요... 동성 지도자들도 힘들었어요. 숙소에 아무 때나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들어와서 단체생활의 규율이라며 막 휘 젖고 다녀요. 서랍장 같은 거 열어보면서, 야 옷 이거 정리 안 하나 이러면서, 서랍장에 개인서류 같은 거 보면서, 누가 뭐했네, 뭐했네 하면서 다 봐요.”

③ 원치 않는 회식

“미리 통보도 없이 갑자기 감독이 오늘 회식 있다 나와라 이런 식으로 강압적이니까요. 제가 약속이 있어도 어쩔 수 없죠.. 운동선수는 빨리 쉬고 회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감독은 자기가 끝나야 회식이 끝나는 사람이라서 힘들죠. 어제도 먹기 싫은데도 술을 먹어야 하고 2차 노래방 가서 12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팀 전체가 가는데 저만 안 갈 경우 나중에 선배들에게 혼나는 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선수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내부 규율이나 운동 성적, 팀워크 등을 이유로 선수 개인의 자유 시간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5.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

1)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정의

학생선수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지도자에게 폭행, 폭언, 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무고,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유통 행위 등을 동반하여 지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유형

(1) 고용에 대한 부당한 압력

경기실적을 빌미로 해고에 대한 협박 등 학교 관계자 또는 학부모로부터 갑질 횡포를 당하는 것

(2) 경기출전 및 훈련에 대한 부당한 압력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선수의 출전을 강요하거나 갑질 등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

(3) (성)폭력 잠재적 가해자로 대하는 행위

혐의가 없음에도 인권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를 가해자로 암시하거나 단정짓는 행위

(4) 무고 또는 허위사실에 대한 신고

지도자가 하지 않은 행위를 거짓으로 꾸며 해당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3)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사례

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

지도자 A는 계약직 지도자로 팀에 합류했다. 하지만 감독은 피해자가 입사한 첫날부터 “매일 아침 자기에게 커피를 타오도록 지시하고”, “퇴근하기 전에는 자기자리를 청소하도록 지시했다.” 피해자는 모멸감으로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5조(징계 사유 및 대상)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권 침해 정도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출전 정지부터 2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②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선수A 학부모는 선수A의 경기출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지도자의 고유권한에 간섭을 했다. 지도자는 실력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출전기회를 부여한다고 대응을 하였지만, 학부모는 지도자의 계약문제를 협박삼아 계속 선수A의 출전을 강요했다.



학부모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징계 대상,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형법 제282조(협박죄)에 따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③ 선수들의 단체행동을 통해 지도자를 (성)폭력 주요 가해 주체로 허위 언급/신고/진술

지도자 A는 본인이 지도하던 B가 자기를 성추행 및 성폭행 했다고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지난해 강제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B선수의 신고 후 팀의 핵심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B를 지지함에 따라 논란은 더 커져갔다. A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이미 인터넷에 해당 사건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부족으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인터넷과 SNS상에서 이 사건 이후 지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선수를 피해자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에 따라 허위신고 혹은 허위로 진술하게 해 상대방을 벌받게 목적으로 거짓으로 지어내어 행동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Part 3

예방 및 대응가이드

1. 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3. 학습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4. 사생활 침해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5.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6.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시 대응가이드



1. 폭력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① 운동부 운영 단체가 폭력 근절 및 대처를 위한 정책과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다.
- ② 운동부 운영 단체가 **스포츠윤리센터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③ 운동부 운영 단체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 ④ 지도자 임용 시 징계이력을 확인하고(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13제4항),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징계사실 유무확인서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 ⑤ 폭력을 포함한 스포츠 폭력 예방 정책의 이행상황을 평가할 기준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한다.
- ⑥ 자녀의 선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선수 생활의 어려움은 없는지 수시로 살핀다.
- ⑦ 부모에게는 자녀의 안전한 훈련 환경과 관련하여 학교나 소속팀, 지도자와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 ⑧ 자녀가 폭력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가정 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⑨ 지도자의 지도방법이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라고 판단할 때는 주저 없이 해당 지도자나 기관에 문제를 제기한다.
- ⑩ 학생의 진학 지도, 개별 훈련 등 개별면담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학부모나 보호자를 동반한다.

*스포츠윤리센터 법정 의무교육

교육명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방식	교육장소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특별과정)	3시간 (취득 유형별 1회)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신규/추가취득자(일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연수원 연간 일정에 따름	온라인강의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사이트 https://edu.k-sec.or.kr
체육지도자 재교육	6시간 (매 2년마다)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중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 (학교 체육교사를 포함함) *(노인/장애인/ 전문/생활/유소년 등)	연간 일정에 따름 (연초 공지)	온라인 강의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사이트 https://edu.k-sec.or.kr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전 체육인 (선수, 지도자, 심판, 임직원, 학부모 등)	연간 일정에 따름 (연초 공지)	온라인/ 오프라인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사이트 https://edu.k-sec.or.kr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장

2. 성폭력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① 운동부 운영 단체가 성폭력 근절 및 대처를 위한 정책과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다.
- ② 운동부 운영 단체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p.27 하단 참고)***을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③ 운동부 운영 단체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 ④ 지도자 임용 및 선수 선발 시 징계이력을 확인하고 관리한다(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3제4항).
- ⑤ 자녀가 성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가정 내 예방교육 및 지도를 실시한다.
- ⑥ 부모에게는 학교나 소속팀, 지도자에게 자녀가 성폭력 없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한다.
- ⑦ 훈련, 합숙, 대회 출전 이후 자녀의 상태를 면밀히 살핀다.

3. 학습권 침해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① 학부모는 지도자, 학교 당국과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 학령기에 있는 자녀는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더라도 학업과 운동을 조화롭게 병행하여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고 다양한 진로에 대비해야 할 학생임을 잊지 말고 노력해야 한다.
- ② 학부모는 자녀가 운동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 ③ 원격수업 플랫폼(e학습터, 구글 클래스룸, 클래스팅, EBS 온라인 클래스 등) 및 교내 운동부 학생 대상 보충 수업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 ④ 경기 성적을 위해 학업 결손을 방치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⑤ 학생선수의 원활한 학습을 돕기 위해 학부모는 학교당국이나 지도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한다.

4. 사생활 침해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① 학부모는 자녀들이 합숙생활 중에 지도자나 동료 선수들에 의해 부당한 지시나 요구,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는지 충분히 살핀다.
* ex) 두발, 복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통제 / 휴대전화 사용의 부당한 제한 / 자유 시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 및 통제 / 개인정보 및 SNS 공유 제한 등
- ② 학부모는 훈련 혹은 대회 출전 이후 자녀들의 신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③ 학부모는 자녀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저 없이 해당 지도자나 기관에 문제를 제기 또는 필요 시 신고한 후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 ④ 학부모는 스포츠를 결과나 성적, 입시 위주로 접근하는 시각보다는 자녀 개인의 선택과 권리가 보장받는 속에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돕는다.

5.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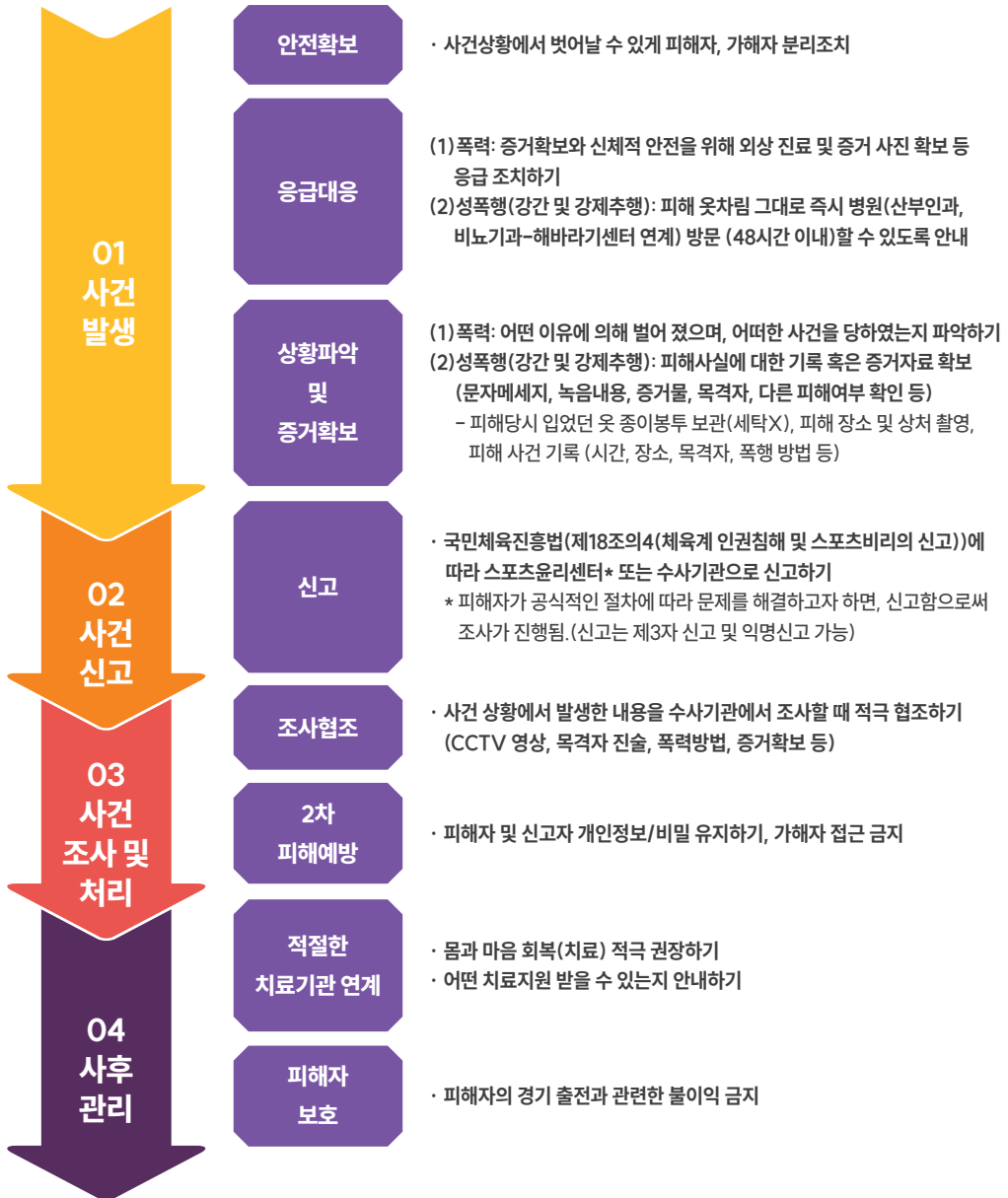
- ① 관계기관은 지도자에게 인권보호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 및 감독한다.
- ② 지도자의 성과평가 기준에 인권보호 책임 이행 실적을 포함한다.
- ③ 관계기관은 지도자에게 적절한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안정과 신분을 보장한다.
- ④ 관계기관은 지도자의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정하고 교육과 지도 이외 업무를 업무를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⑤ 관계기관 및 학부모는 지도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부당한 간섭 및 통제를 하지 않는다.
- ⑥ 학부모는 자녀의 주전 선발, 경기 출전시간 등을 이유로 지도자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6.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시 대응가이드



Q1. 대응절차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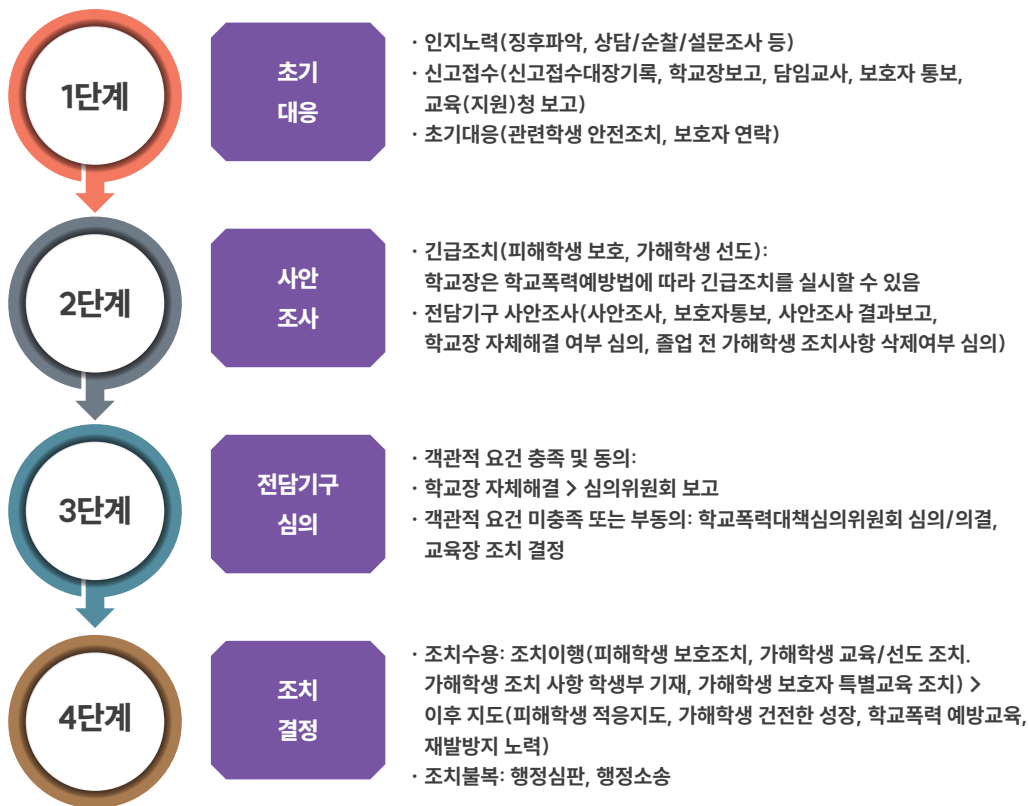
도움 요청 시/피해 사례 인지 시, 협회 및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내용 숙지 필요



Q2. 신고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스포츠윤리센터



Q2. 신고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학교 및 교육청(폭력)



Q2. 신고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학교 및 교육청(성폭력)



Q3. 학부모 및 관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초기대응 요령

신고



-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4항)

피해자 조치



- 심신 안정 및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 급선무
- 가벼운 상처는 가까운 의료시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에 신고

가해자 조치



-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자 역시 충격을 받아 돌발행동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빨리 보호자에게 연락
- 가해자에게 지나친 질책 및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유의

보호자에게 연락



- 보호자에게 사실을 빠르게 알리기
- 보호자들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상황전달, 정해진 장소에서 선수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
- 사안의 내용과 협회 측의 대처사항에 대해 보호자에게 정확히 안내
- 학생선수인 경우, 보호자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

목격자 조치



- 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받은 간접 피해자도 유사한 문제 반응 나타날 수 있음
- 현장 접근을 통해, 특히 학생선수의 경우 스트레칭, 경기장 견학 등 흥미 있는 활동으로 주의를 돌려 심리적 충격 완화 필요
- 사안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상황을 인식시키고, 차후 유사한 폭력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교육 실시
- 사안에 관련된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낙인을 찍어 따돌리거나,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시키기

Q3. 학부모 및 관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요**

- 가해자가 지도자일 경우: 지도자 교체, 지도 환경 변경
- 가해자가 선수일 경우: 분리조치
- 수사기관과 연계해 가해자 접근·연락·접촉 금지 조치



**훈련을 가는 것이
힘들어요**

- 치료 기관 안내 및 연계
- 일정기간 휴식 제공
- * 치료 기관 안내 및 연계(38P 참고)



**지원(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받고 싶어요**

-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전문가 상담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 연계
- 스포츠윤리센터 사고 처리 도움, 고소장 작성, 검찰/경찰 조사 지원
- * 치료 기관 안내 및 연계(38P 참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 전담기관(수사기관 포함) 및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진행
- 조사결과에 따른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징계 관할 단체에서 처분



**가해자가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 가해자가 동료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강제 불가
- 가해자가 지도자·일반인인 경우에도 위원회·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서면사과 하도록 강제는 어려움(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Q3. 학부모 및 관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3) 2차 피해 예방



2차 피해란?

폭력 가해자 또는 다른 사람이 폭력 피해자·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소문·따돌림 등으로 괴롭히는 것

2차 피해 예시

조용히 절차에 따라 해결되는 줄 알았던 사건 내용이 해당 종목 내부는 물론 스포츠계 내부로 퍼져 나갔다. 가해자의 인적 사항은 물론 피해자의 나이, 이름까지 모두 스스럼없이 알려졌다. 심지어 대회 일정이 겹치는 경우 가해자를 매도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한 계속해서 언급되었으며 “개가 그렇게 예쁘냐?” 또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라고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 위 내용은 2차 피해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2차피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 비밀 보장

- 피해자 정보는 사안처리 담당자에게만 공개
- 담당자는 신고자/고발자에 대한 모든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및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됨.)



2차 피해를 입은 것이 의심/확인된다면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
-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원하는 경우 가해자가 학생·지도자라면 훈련 환경 분리, 훈련 배제 등의 조치
- 운동부 내 스포츠 인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2차 가해 예방교육 제공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2차 가해를 한 경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



가해자의 위협이 염려되는 경우

- 수사기관/법원에 신변안전조치*, 구속 신청
- *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 쉼터 등 시설에서의 보호, 신변 경호, 집 주변 순찰 지원 등

Q3. 학부모 및 관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4) 신고기관 안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으로 즉시 신고하기



(1) 스포츠윤리센터

상담·신고 접수(익명 상담/신고 가능)

홈페이지 <https://www.k-sec.or.kr>

이메일 with@k-sec.or.kr



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2876 / 02-6256-1057

전화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00~오후 09:00

토요일, 공휴일에는 온라인 상담신고하기 이용

방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78, 7층 (우:04168) 권익보호팀

방문 가능 시간: 평일 오전 09:30~오후 05:30

※ 스포츠윤리센터로 우편을 보내주시면 상담사 확인 후 답변 제공



(2) 학교 및 교육청

신고 접수

홈페이지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 www.safe182.go.kr



대표번호

(국번없이) 117/ (문자신고) #0117

전화 가능 시간: 24시간

방문

전국 17개소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Q3. 학부모 및 관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5)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기관	연락처	지원내용
스포츠 윤리센터	T. 1670-2876 / 02-6256-1057	· 체육계 인권침해, 스포츠 비리 상담 및 신고 ·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 의료·법률·심리·정서·임시주거 지원
국가인권 위원회	T. 02-2125-9862 / 1331 메일 sports@nhrc.go.kr 텔레그램 : @hrsports	· 스포츠인권 진정사건 조사 :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차별 피해상담 및 피해사례 조사 구제 ·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가의 심리 및 법률상담 무료지원
여성 긴급전화	T. 1366 365일 24시간 운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등으로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호 또는 긴급상담 지원 · 전화권역(시·도)별로 설치·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긴급 피난처 운영 임시보호 (*최대 7일간 숙식제공, 데이트폭력 피해자 최대 30일 보호)
해바라기 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지원기관 '해바라기센터' 확인가능	·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 상담, 의료지원 · 법률·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전국에 39개 센터운영 · 여성경찰관 상주, 피해자 진술조서(진술녹화)작성, 진술조력인 지원을 통한 진술조력 제공(만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지속상담 ·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의료진이 무료진료,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를 채취 ※ 단, 비급여 심리치료는 회당 15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무료법률지원사업,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T. 02-735-8994 365일 24시간 운영	· 상담 신청 시 상담과 함께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등 연계 지원

기관	연락처	지원내용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T. 02-817-7959 메일 kcsvrc@cyber-lion.com	· 정책, 제도적 개선 : 사이버성폭력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을 제시하여, 법과 정책,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 피해지원 : 상담지원, 영상상제지원,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를 도움 · 교육 : 교육, 인식 개선
성폭력 피해 상담소	T. 02-2125-9862 / 133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지원기관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확인가능	· 상담 : 피해자 및 가족 지속상담 · 수사·재판 절차 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 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 전담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역 내 시설 연계 :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의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지원 - 피해상담
성매매 피해 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지원기관 '성매매피해 상담소' 확인가능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 및 자활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 보호 및 상담,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 진학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
대한 인권센터	전국 62개 대학	· 인권상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사건 처리 · 학내 사건의 상담·조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9개 전국 지원센터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홈페이지의 전국센터 안내에서 확인가능)	· 경제적 지원 :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간병비, 돌봄 비용, 취업지원비 등의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피해 회복을 도움 · 주거지원 : 범죄피해로 기존 집에서 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주거환경개선, LH 주거지원 신청 절차 안내등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 · 법률지원 : 법과 형사사건 절차의 어려움으로 자문 및 안내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재판모니터링, 법정동행 등을 지원("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심리지원 : 불의의 범죄피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상담, 개별·집단 치유프로그램(자조모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 · 기타지원 : 전국 지원센터의 특성의 맞는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회복을 도움

기관	연락처	지원내용
대한법률 구조공단	T. 132 https://www.klac.or.kr 전화, 사이버, 화상상담(예약), 방문상담(예약)	·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
스마일센터: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	T. 02-333-1295 (24시간 전화접수 및 상담) 등록면담, 심리치료 등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강력범죄 피해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 겪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회복을 지원 ·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 서비스



Part 4

부록

1. 관련법률

- 1) 스포츠 폭력 관련 법률
- 2) 성폭력 관련 법률
- 3) 디지털 성착취 법률
- 4) 학교폭력예방법
- 5) 국민체육진흥법

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3. 체크리스트



1. 관련법률

1) 스포츠 폭력 관련 법률

학교폭력 방관자 처벌이 가능할까요?

- 폭력 행위를 지켜보고 방관한 학생도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조치도 가능합니다.
- 폭행 당시 옆에서 피해 학생을 지켜보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 현장에서 위압감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 것에 해당하며,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현장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위 사례와 같이 가해 학생의 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여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분	법률명	내용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 1항, 제 2항의 죄(제283조 협박, 존속협박)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언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조, 방관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2) 성폭력 관련 법률

디지털 성범죄 적용 법률

구분	법률명	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 3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디지털 성착취 법률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 [2020.6.25. 시행]

구분	법률명	내용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	형법	·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연령 16살로 상향 · 성폭력범죄 모의하면 처벌 (3년 이하 징역)
	성폭력 처벌법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였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처벌 · 불법 성적 촬영물 등 촬영, 제작 법정형 상향(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성적촬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면 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로 협박 또는 강요(협박한 자 1년 이상의 징역, 강요한 자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보호법	·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 배포, 제공, 전시, 상영, 소지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불법 성적촬영물 거래, 유포로 얻은 범죄 수익환수 촉진
	정보통신망법	· 온라인사업자에게 불법 성적 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부여 · 불법 성적 촬영물 방치하는 온라인사업자 처벌(국제공조수사)

4) 학교폭력예방방법

학교폭력예방방법 제17조 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별 대회참가 제한기간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 3개월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 6개월
- 8호(전학) : 12개월
- 9호(퇴학) 퇴학 사유가
 - 1)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인 경우 : 10년
 - 2) 그 외의 경우(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 5년
- 퇴학 조치를 받는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제한기간 동안 선수자격 박탈(선수등록 금지 등)도 병행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 시 중한 조치 적용
- 학생선수로 받았던 징계조치에 따른 대회참가 제한 및 선수등록 등의 제재는 학생신분 유지와 상관없이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부터 해당 제재 기간 종료시까지 적용

5) 국민체육진흥법(주요조항 발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여,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8.>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 2. 4.>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18.>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 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 8. 18., 2022. 1. 18.>
-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8.>
- ⑤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8.>
- ⑥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 8. 18.>
-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 ⑧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8.>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체육지도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아니 된다.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소속 기관·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8.>
-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8. 18.>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2022. 1. 1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18., 2022. 1. 18.>
- ③ 체육회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 ④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2022. 1. 18.>
-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처리·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통합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중요사항 발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각 경기단체 및 협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 제2항 관련)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3. 권한남용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권한남용 행위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6. 폭력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외 매우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제명 · 폭력 행위가 치료기간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또는 폭력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 성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언어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8. 성추행 등 행위	선수관리담당자	·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추행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9. 성희롱 등 행위		·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10. 인권침해 (정당한 휴식권, 학습권 등)		· 침해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침해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11. 괴롭힘		· 괴롭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 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극적 표현)

※ 자세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은 “대한체육회_정관·규정”

(<https://www.sports.or.kr/home/010708/0010/main.do>)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체크리스트

본 체크리스트는 선수들의 스포츠인권 현황 점검 및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운동부 내 스포츠인권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인권실태 파악을 통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건강한 스포츠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최근 1년간 운동부 내(합숙, 훈련, 대회 중 포함)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세요.**

1) 폭력	Yes	No
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② 훈련태도나 경기성적을 이유로 체벌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③ 일정시간 집단으로부터의 격리나 감금을 당한 적이 있다.		
④ 개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운동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		
⑤ 선배나 동기, 지도자로부터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2) 성폭력	Yes	No
①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를 들은 적이 있다.		
② 몸의 밀착,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		
③ 지도자가 사적인 만남이나 데이트를 강요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④ 성적표현, 사진, 자료 등을 보여주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본 적이 있다.		
⑤ 성이나 성적 정체성에 기반한 모욕,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		
3) 학습권 침해	Yes	No
① 대회 출전을 위한 훈련을 이유로 수업 불참 등을 강요 받은 적이 있다.		
② 훈련이나 경기일정을 미리 공지 받지 못해 학습에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		
③ 대회 출전, 훈련을 이유로 선수들에게 학교 수업 불참 등을 강요 받은 적이 있다.		
④ 훈련시간이나 대회일정을 미리 공유 받지 못해 학습권을 침해 받은 적이 있다.		
⑤ 특별한 이유 없이 훈련 시간, 자유 시간, 귀가 시간을 임의로 조정해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4) 사생활 침해	Yes	No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이동을 제한 받은 적이 있다.		
② 개인의 훈련 성적 및 경기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서 공개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은 적이 있다.		
③ 지나친 운동지시나 휴식의 제약, 단체 생활에서 부당한 간섭과 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		
④ 운동부 내에서 부상 시 무리한 운동을 강요해 신체 건강과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⑤ 본인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에 대해 강제적으로 SNS 공유를 강요 받은 적이 있다.		
⑥ 특별한 이유가 없는 통일된 두발의 형태, 의상 선택과 관련하여 개인의 개성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은 적이 있다.		
⑦ 자유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고를 강요하는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		
5) 지도자인권 침해	Yes	No
① 선수나 선수보호자로부터 폭언, 폭력 등 명예훼손이 가능한 언어나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② 정당한 지도활동에 대해 반복적인 불만을 표출하여 지도활동이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③ 선수나 선수보호자로부터 부당한 사생활 간섭 및 통제를 받은 적이 있다.		
④ 부당한 계약이 발생한 적이 있다.		
⑤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시, 가해행위를 무고하게 뒤집어 쓴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발생 징후가 확인(yes 체크 발견 시)되면 인권감사파견을 통한 추가 교육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참고문헌

IOC(2022), IOC Strategic Framework on Human Rights

IOC(2021), Olympic Agenda 2020+5

IOC(2021), Olympic Charter

대한체육회(2019).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드스

고용노동부(2020). 2020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2020).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안내서. -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향하여
스포츠가 버려야 할 것들

국가인권위원회(2020).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2021). 스포츠인권 현장/가이드라인 정비 연구

스포츠윤리센터(2021). 「스포츠 인권증진 정책 발굴」, 체육계 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스포츠인권실태조사」 심층 인터뷰 사례집(2021) 중/고등학생선수 대상

「스포츠인권실태조사」 심층 인터뷰 사례집(2021) 프로/실업팀선수 대상

「스포츠인권실태조사」 심층 인터뷰 사례집(2021) 초/중/고 학생선수 학부모 대상

교육부(2021).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집

서울특별시교육청(2021). 학생을 위한 성폭력 신고 가이드

스포츠윤리센터(2022). 브로슈어

대한빙상경기연맹(2022). 대한빙상경기연맹 인권 가이드라인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edunet.net)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afe182.go.kr)

